

제433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5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에 대한 공청회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3)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상정된 안건

1.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에 대한 공청회 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19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3) 19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19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19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19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19
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19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1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19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19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19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 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에 대한 공청회

○소위원장 박정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두현 재미와 느낌 연구소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는 강동진 관광정책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현 진술인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두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실제로 연출하고 기획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권두현이라고 합니다.

1995년에 관광 정책이 교통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문화관광축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문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은 실제로 문화관광과 관련된 최대의 성과를 낸 축제 정책이라고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정책들이 지금 진행돼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실

은 정책적 지향점을 수치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문화관광축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산 확보와 민간 역량들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화관광축제 육성법 관련한 부분에 후원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적용시킨 것은 매우 선진화된 제도적 시스템이고 또 현 사회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축제와 관련된 관계 법령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1950년대 사실 한국의 축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첫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축제가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한국 축제 정책들은 대부분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관광사업법이 만들어지고 70년대에 소위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80년대에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 서울올림픽 그리고 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의 진행,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축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 속에서 법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국가 주도의 역할이나 지방자치제의 역할은 있었지만 민간 역량이나 기업의 에너지들을 축제로 투입시키고 강화시키는 흐름들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의 과정 속에서 이제 K-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한국 축제에 나열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후원 제도의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리고 후원 제도의 시스템 속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 또 지역의 문화 인력들의 육성을 함께 담아서 과제로 발전적인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축제의 후원 제도의 필요성은 저는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실 축제는 대부분이, 거의 100%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예산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공공정책의 시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관성적인 구조와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들을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협찬이라는 수익사업 확보를 통해서 목적사업적인 기능들 그리고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전략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고민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조금 성격이 사실은 행정으로 보거나 민간단체로 본다면 약간 소모성 기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정책적인 후원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목적 지향적인 사업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약 14년 정도 실제로 기획·운영·진행을 해 왔었

는데 저의 경험상 그 당시의 보조금이 약 3억이었고 제가 후원금 그리고 경영 수익 전략으로 만들어 낸 것이 한 칠팔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칠팔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교육비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3억 정도의 보조금을 줄 때 저는 한 3억 정도 교육비를 실제로 투자해서 문화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문화전문인력으로 100명 정도를 양성해서 축제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로 문화관광축제 전국 평가에서 11년 동안 1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예산 구조의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후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민간 인력의 양성이나 기업의 경영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후원제도의 활성화는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의 요사코이 축제나 세계적인 축제인 브라질의 리우축제는 대부분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원편 사진들은 일본의 요사코이축제인데 이 요사코이축제는 기업별 후원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개막식에서 후원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줌으로써 사실 기업의 경영전략과 축제 브랜드가 합목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고 브라질의 삼바스쿨 역시도, 이것은 조금 더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댄싱 팀 자체를 기업과 연계시켜 줌으로써 댄싱 팀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령 코카콜라가 A라는 댄싱 팀을 직접 후원하도록 브라질의 삼바스쿨에서 이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이를 통해서 브라질의 삼바축제나 일본의 요사코이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제 가치를 확장시키는 방법에서 경영전략을 확보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역의 문화인력들이 경험 답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상품을 만드는 데 비해서 사실 축제 프로그램은 관성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향을 하는데 기업의 이런 경영전략이나 시장분석전략들이 축제에 들어온다면 축제는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소멸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이걸 제 경험인데 보조금에 입각해서 들어오는 축제의 부스나 문화단체들은 실제로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품 판촉을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해 보면 축제가 한 8시 되면 문을 닫는데 그 전에 문 닫는 것들은 대부분 관료화된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서 일찍 문 닫고 가 버리고 축제에 상품을 철저하게 판촉하는 기업들은 10시까지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통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적극적인 기업 전략들이 축제에 투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축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고민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후원은 문화인력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적 학습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다루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축제가 지역의 문화경제·문화산업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인력들이 기업의 경영전략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답습하고 배워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고민들이 이 후원제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 상품과의 동반 성장 얘기인데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탈춤축제를 진행하면서 기업 후원이 공식 기념 상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특정한, 말하자면 공식 지정 상품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역축제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 제도를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법령으로 본다면 지역축제가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공식 지정 상품 제도나 후원제도의 활성화를 법제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축제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축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문화경제 기업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K-페스티벌의 진화를 위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하고 기존의 30년 전에 만들어진 문화관광축제의 시스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저는 그 첫걸음이 축제의 경영전략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시키는 시스템이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법령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문화관광축제의 후원제도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지원에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그런 작은 단초이지만 법률 제정의 문제를 넘어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작지만 글로벌문화축제의 도약을 시도하는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축제의 건강성을 고민하는 저의 견해로는 후원제도를 보다 법령화시키고 이것들을 지역축제에 보다 완고하게 적용을 시켜서 지역축제의 보다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지하고 K-페스티벌의 새로운 도약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권두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10분 딱 맞추셨지요?

○진술인 권두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고생하셨어요.

이어서 서원석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서원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관광 50년 역사와 함께하는 한국관광학회 회장 서원석입니다. 저는 경희대 교수로 있고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화천군의 인구가 약 2만 2000명,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요. 이 도시에 185만 명, 특히 외국인이 12만 명 이상이 왔다 갔을 정도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

천 춘천 등 인근 강원도의 숙박이라든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축제가 인구 규모를 뛰어넘는 외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보면 약 57% 정도가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고요. 이 중에서 소멸고위험지역이 23.1% 그다음에 소멸진입지역은 34%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잘 만들어진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례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 관광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에 안착하는 정주 의도가 높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지역축제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인구감소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활력이 저하되는 지역에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제도는 지역축제를 단년도 행사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대응 전략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 역시 일회성 지원에 머물러 있어서 지역축제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관광학계에서 수년간 계속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축제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굉장히 중요한, 민간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는 성공하고 있는 글로벌 축제들이 많은데요. 이 글로벌 축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축제는 더 이상 지역행사 범주에 머물지 않고 관광, 콘텐츠, 소비가 결합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나 캐나다 퀘백의 윈터 카니발, 일본 삿포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심 같은 경우에도 대형 브랜드 조형물을 만들고 체험형 팝업도 만들고, 그런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도 매출은 1조 601억 원으로 작년 대비 10%씩 증가한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양식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음악축제지오, 코첼라라는 축제의 공식 파트너십을 하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 같은 행사에도 삼성이나 기아자동차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축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3000만 명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3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축제 집중 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또 시장 환경의 정비도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법률안은 민간 후원·협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를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안 중에서 저희가 학계 차원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정책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비용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의는 행정적 관리 대상 설정에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축제의 주체성이라든가 참여성, 공개성 등 본질적 요소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또는 이 개념이 굉장히 모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학술적 정의와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5조(기본계획)와 8조(실태조사)를 보면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조항으로서 의미가 큰데요.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현황 분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또는 포함 내용,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의 범위 및 필수 포함사항을 보다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조사 주기라든가 조사 항목, 활용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에서 조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11조 관련해서 축제 지정 요건이나 평가 기준, 지정 유지·취소 등의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제한적으로 제시돼 있어서 향후 지정의 공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11조의 글로벌 축제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화관광축제와의 관계, 차별화된 지정 기준 또는 지원 수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행령 규율 시 정책연구기관 또는 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라의 시행령 위임사항의 범위와 내용 설계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후원과 협찬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특히 후원과 협찬 및 기부금 관련 조항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관련된 법제도와 충돌 또는 관련성 있는 우려가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개별 사업

및 지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문화관광축제를 법률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최종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서원석 진술인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두 분 진술인, 진술자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이 법이 제정됐을 때 현재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실익이 직접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실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각각 답변 주십시오.

○진술인 권두현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따지는데요.

우선 현재 축제와 관련해서 후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양성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축제가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에 대한 보다 본원적인 예산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싹틀 수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지역축제의 가장 큰 난점은 지역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지역과 관련된 지역인력들이 후원을 통해서 자기의 전략적인 계획을 시장에 맞춰서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축제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탈춤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일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안동 간고등어나 안동 참마, 안동 하회탈 이런 것들이 사실 축제의 공식 지정 상품을 통해서 활성화되면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장시킨 지역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에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 산업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런 차원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서원석 진술인님.

○진술인 서원석 저희가 3000만 명 관광객을 달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글로벌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마이스 관련된 행사를 가면서, 호주의 비비드 축제 담당하신 분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비비드 축제에 대한 경관 사진을 계속 보다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에 띈 게 뭐냐 하면 너무나 멋진 행사인데 그 후원기업이 삼성하고 기아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훌륭한 축제에 우리나라 기업이 후원하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왜 우리나라 축제에 후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다면 우리가 3000만이라는 숙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런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글로벌 축제가 만들어짐으로써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면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어려운 점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강동진 관광정책관님, 지금 이 법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정하고 글로벌 축제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진흥법 제48조 2항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따라 저희가 각 축제별로 지정 기준이라든지 심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당 부분이 또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뒤에 민간 기업의 후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법의 예외조항을 여기에 두겠다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법의 주무부처인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꾸로 굳이 이 법에 안 넣더라도 협의가 되면 기부금품 모집·사용법에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제정법의 실효성이, 굳이 제정법을 만들어야 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쪽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일단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행안부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준 것은 기부금품법의 예외조항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규정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기부금품법의 예외조항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많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축제법에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진입효과를 낮추거나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들에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권두현** 제가 약간 보완드려도 될까요?

○**김승수 위원** 예.

○**진술인 권두현**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지원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기부금

제도가 있고요, 기부금품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지정기부금 제도는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기업에서 이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들은 서류가 엄청 복잡할 뿐 아니라, 예산 구조도 이중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산을 포함시켜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기부금품법을 만약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담당 공무원들이나 민간 주관 단체에서 이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실제로 적용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투명하고 쉽게 턱을 낮춰서 기업의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그 부분은 권두현 진술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역으로 기부를 하는 민간단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거법이 하나라 하더라도…… 본인은 돈만 기부하면 되는데 법마다 절차나 기준이나 그 이후에 세제혜택받는 것이 제각각이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으로 분산돼 있을 때 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부금품법의 관련된 예외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여러 개의 부처에서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문체부도 또 소관 법이 다르면 관광국 또 문화예술국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 내용들은, 저는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돼 있는 법과 연계해서 가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제정법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하나의 단일 법제화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근거 법령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꼭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아니고 하고 있는 거를 법으로 상향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실익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진술인 권두현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화재 관련된 법들도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적 근거 하나가 실제로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향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축제나 문화 이벤트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적인 흐름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근거로 인하여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거나 지역축제의 입장에서, 문체부 입장에서 보면 문화관광축제 또 글로벌축제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전체 지역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축제 중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는데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축제라 하더라도 아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축제라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인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축제를, 축제라는 거 보면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 자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중간에서 가장 애로를 겪

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지역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지역축제의 필요성과 지역축제의 운영상의 애로점, 특히 자원 조달에 애로점이 가장 크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을 위한 근거 법령상의 문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 자체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 줘야 될뿐더러 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부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 지금.

불이익 없이 또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원활한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문체부 입장에서는 관련 세제 당국인 기재부라든지, 지금 기획예산처지요, 여러 군데하고 같이 해서 그런 정책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진중오 위원님.

○진중오 위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 하셔서 가지고 중복이 되는데, 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후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왜냐하면 후원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술인 두 분께서는 말씀을,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지금 어느 기업이 왜 후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축제가 이미 토착화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관에서 알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 지금 전담 조직이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면 될 것을 굳이 기업한테 떠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진술인 권두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축제에 공공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고요. 프랑스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들이 축제에 대한 지원을 꺼려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가 축제 자체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높고 먹자라는 건데 기업이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해 줘도 될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저간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축제를 해 주면 또 다른 축제도 해 줘야지 이런 기업들만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사실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으러 다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제도 자체가 하나만 들어지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축제 후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제화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 이거는 가능한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축제 자체에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이 반드시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축제의 흐름 속에서 K-페스티벌이라는 그런 과제를, 그리고 지역소멸에서 사실 축제가 차지하는 역할이 그 대응책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기업의 이미지나 또 후원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성 디딤돌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이 법제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진중오 위원 이게 법이 법제화돼서 하면 좋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저도 조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에 후원을 받으러 다녀 봤거든요. 기업이 후원을 안 해요. 현물로 하려고 하지 현금으로는 절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현물로 했을 경우 대외 운영 자체, 행사 자체가 굉장히 난항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해요.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법제화됐을 경우에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글로벌화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지만 정부에서 하면 될 것을 기업에다 떠맡긴다는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 조직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술인 권두현 현재 지역축제는 거의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진중오 위원 관에서 그냥 알아서 축제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권두현 그렇습니다. 행정조직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진중오 위원 그런데 결국 이거는 문체부 자체에서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법은.

○진술인 권두현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후배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공공 지원책을 받아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당신들은 정치꾼이 된다. 시장의 논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후배들은 올라오고 사실 선배들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장 경쟁력 확보에서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저는 이 후원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기업들은 후원제도를 명칭 삼아서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에 있는 이 축제 문화 인력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 실제로는 8 대 2, 6 대 4, 7 대 3,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은 굉장히 유려한 하나의 디딤돌이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진중오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진중오 위원 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하세요.

○진중오 위원 아닙니다, 끝날 것 같아서.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재원 위원** 질의라기보다 보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도 이러한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기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적이 있어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관광축제를 찾아오는 대상들,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한 대안 서비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축제의 질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법안을 살펴보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보자면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 보자면 아까도 권두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을 하는 것이 기업이고 수익 창출이 목적인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관측 활동이 투입된 현장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너지를 낼 것 이다라고 보시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과도한 기획에 있어서의 개입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입법에서 어떠한 보완 사항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두현 대표님은 안동의 탈춤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기획을 해 오셨고 또 기업 후원도 받아 보셨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안동탈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후배들은 자꾸 치고 올라오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잘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또 작은 기업, 큰 기업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모두가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익의 효과가 더 컸을 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실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경주에 황금카니발 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스타를 돌아다니다가 민원이 올라온 것을 발견을 해서, 그거 경주시에서 아마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황금카니발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작은 기획자인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다음 해부터 기획하시는 그 기획사를 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황금카니발을 경주황금카니발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경주시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 작은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 그걸 승소를 하셨어요, 소송을 하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또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걸 업어가고 싶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라면 다른 육성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수행하는 기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의 규모라든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눈높이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정도의 콘텐츠 수행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배제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기획 예술인들이라든가 전문인들이 오히려 배제를 당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의 문화기업이 할 것이라는 보장, 어떻게 우리가 마련을 할 것인가? 또 참신한 아이디어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올라오도록 할 것인가? ‘벚꽃엔딩’ 같은 경우도 여수잖아요. 그 노래가 떴기 때문에 벚꽃과 관련된 그러한 콘텐츠를, 거기서 문화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법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공공법인’, ‘해당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받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것도 소기업인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다른 콘텐츠들을 좋은 콘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인가의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신생 및 전문 문화 소기업 등 민간 주도 혹은 지역국민 주도의 진출 및 참여를 보장하거나 독려를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독식 구조가 생긴다.

계속하는 기업은 지역에서 그 콘텐츠를 수행할 만한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그 기업이 결국은 관하고, 죄송합니다, 싸움을 할 것이고 그 싸움되는 기업이 결국은 그 기업하고도 친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카르텔로 유지가 되는 구조를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법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권두현**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을 보시면 일단 문화관광부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관광축제에서 시범적인 어떤 공연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작은 지역축제로, 이게 최근에는 작지만 특화된 그런 페스티벌로 현재 전체적인 축제 트렌드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아마 이 법령에 내부적으로, 항을 살펴보면 담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돼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진술인 서원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조에 있는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을 보시면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이라든가 체계적인 육성, 지원 방안 등이 있어서 이런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안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일단 법안이,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기존의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기반 기업들이 없는 소도시 축제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후원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이 때문에 축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를 보완할 장치가 또 필요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권두현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나 단계적으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로부터의 혁신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축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K-페스티벌의 새로운 모델 케이스가 하나의 도미노 현상처럼 퍼져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 또 민간의 참여를 법제화시키면서 그것을 예산 구도로 포함시키는 그런 긍정성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 시도되는 법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방금 하신 위원님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 서원석 법안에 지정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소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할 수 있게끔 기준 설정을 할 때 구체적인 안을 담으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마치셨어요?

○조계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관광정책관님, 이렇게 해서 후원과 협찬이 가능해지면 기존에 있는 기부금법 관련한 법으로 모두 관리 감독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저희는 일단 후원에 대한 일반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축제법에는 후원 규정을 담고 그다음에 기부금법은 기부금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저희가 변형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부작용이 없이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하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권두현 진술인님, 현업 과정에 지금 하고 계시는 재미와 느낌 연구소가 그냥 연구소예요, 아니면 무슨 축제 기획 기능도 갖고 계신가요?

○진술인 권두현 현업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문화연구자입니다. 그런데 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후배들이나, 먹고살 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고민도 하게 되고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속 경영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기업도 찾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예산 구도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영성에 맞지 않으면 축제의 지속성을 발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서원석 진술인도 마찬가지로

가지인데 안동하회탈춤이나 아니면 산천어축제나 어느 정도 명성을 얻어서 규모가 있는 축제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작은 축제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후원과 협찬이 가능해지도록 법제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축제 관련한 기획사 내지는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정도나 돼요?

○**진술인 권두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축제 산업 구성은 과거의 이벤트 기업들이 사실 지역축제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고요.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들은 과거에 문화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법령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 줌으로써 첫 번째는 문화관광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축제에 먼저 이걸 실험해 보고 작고 캐릭터 있는 축제들을 기업과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찾아 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함의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은 한번에 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치상으로 본다면 현재 축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국의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많지 않지요?

○**진술인 권두현** 많아도 서너 개 정도.

○**소위원장 박정하**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양 단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게 제대로 된 질 좋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한 아이템 발굴 기간도 필요한 거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업체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특정 기업군 내지는 컨설팅군이 전국의 축제를, 소위 말하면 그냥 독식해 버리는 이런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제안이나 기획 능력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을 테니까 업체에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능력도 높을 거고 그러다 보면 소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특정 기획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전국의 모든 축제를 그냥 다 섭렵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서 교수님이나 권 대표님이나 정책관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컨설팅, 소위 말하는 이것들을 기획하거나 할 수 있는 회사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 부분들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가 한 3000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가 1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은……

○**소위원장 박정하**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은 빼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포함해서요.

○**소위원장 박정하**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그런데 문체부에 축제 지원 예산이 102억이 있습니다. 102억 베이스하에서 저희가 소위 잘나가는 축제들을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 피어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창작

자라든가 기획자 보호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부분들은 완전히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라든지 근거의 부재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은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말씀 주신 대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행계획, 종합계획들에 따라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서 교수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진술인 서원석 지금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축제 규모가 얼마나 영세한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 산업이 활성화되고 커지고 지역의 대표 축제들 또 글로벌축제들이 생긴다면 산업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너 개가 아니라 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권두현 실제로 문화관광축제는 3000개라고 하지만 여기에 농림수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각 부처의 이벤트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축제 산업이나 이벤트 산업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시장을 풀어놓음으로써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면 기획자의 역량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 대부분의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 자치단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독점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작은 아이тем들이 발굴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다 평준화된 시스템들을 맞추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들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작은 발굴 아이тем들이 드러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시스템 자체가 네트워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고 강력한 캐릭터를 가진 축제가 발굴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는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수행할 만한 양질의 기획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발굴, 많이 키워서 가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권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내에 그래도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문화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분들이 소위 규모화된 기업군에 잡아먹혀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또 대형화된 기획사들이 전국을 다 섭렵해서 똑같이, 획일화된 축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력 양성이나 그런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김재원 위원 한 가지 말씀……

○소위원장 박정하 예,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기업의 후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보완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등에 관한 요건을 보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보면 ‘지역축제

의 인지도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이 다섯 번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그냥 영으로 하지 말고 법안에 올리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강력하게 작은 축제라든지 발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관광정책관님, 혹시 기업들이 지금도 기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협찬 받아 봤는데 돈은 잘 안 하거든요. 물품 협찬은 애를 쓰면 해 줍니다. 그런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법안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가지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실제적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타진을 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재부 쪽이랑 행안부 쪽이랑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없으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더라도 기업들은 꿈쩍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칠까 합니다.

네 분 위원님 주신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법안 심사하는 데, 특히 김재원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 주신 대통령령을 아예 법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두 분 진술인 여러분도 감사를 드리고 주신 말씀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장내 정리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3시 2분인데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3)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15시17분)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쟁점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1쪽입니다.

3건의 법률안은 먼저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 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안과 조계원 의원안은 추가로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체육지도자가 인권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조계원 의원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에 재정지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법상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 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없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렵고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덕흠 의원안, 조계원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 보시면 조계원 의원안은 ‘체육지도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선수의 인권침해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조계원 의원안과 같이 국가 사업에 대한 우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기관·단체의 표준계약서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대현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박덕흠·조계원·김재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전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대부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 제2항 후단에서 ‘경우’와 ‘또는’ 이것이 반복되어서 그 표현을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폭행에 따른 계약 해지 대상에 체육지도자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선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2항 전단에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로 그리고 후단의 ‘체육지도자’를 선수를 포함해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6항의 이해관계자 청취에 관한 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표현을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으로 돼 있는 것을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쪽입니다.

국가가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트너선수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대한체육회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나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협회가 선정하거나 승인한 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파트너선수들이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보상, 보험, 지원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선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명확한 지원과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파트너선수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국가대표 파트너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진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발의해 주신 안 이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현행법상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현행법에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를 추가를 하고 14조 선수 등의 육성……

지금 4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표현만 이루어져도 정의 조항이 마련되고 국가의 노력 의무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진중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선수와 훈련하는 것보다 국가의 비용은 더 절약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 조항 삽입을 하고 표현을 ‘국가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 정도로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다 말씀 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진중오 위원님 말씀 주세요.

○진중오 위원 사전에 차관님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재부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국가대표를 2배수, 3배수로 선발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너선수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김재원 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진중오 위원님께서 차관님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의 의견이,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은 말로는 동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범위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규모로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관리하에 이 부분의 법적 정의 부분을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올리는 게 어떨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이게 자구 수정해서 종합해서 대안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전문위원

님?

○전문위원 김용규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그사이에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지금 보니까 선수의 규정이 있고 국가대표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게 4의2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의3 정도 해서 ‘파트너선수라 함은 국가대표를 돕는’, 정의 한 줄 정도 넣고 본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가 금요일로 예정돼 있지요? 금요일까지 가능하냐? 대안 정리하는 것까지 가능하냐?

○전문위원 김용규 예, 금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안.

○전문위원 김용규 국민체육진흥법 4의3을 넣어서 파트너선수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국민체육진흥법 2조 제4의3 ‘파트너선수란 대학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추가를……

○소위원장 박정하 하자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하자는 얘기입니다. 파트너선수 정의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간략하게 자구 정리를 하셔서 문체부에서 배석하신 공직자분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그사이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거 해서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가 완성이 되고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대안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 주세요.

○임오경 위원 저희가 정의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원체계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는 해야 됩니다.

파트너선수가 한 종목당,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이다 그러면 15명의 선수가 기존 선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트너선수를 정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모든 선수의 그 2배 이상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생겨요.

○진종오 위원 예산은 좀 다릅니다.

○임오경 위원 일단 파트너선수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종목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일부 종목……

○임오경 위원 현재 일부 종목들이, 스물몇 종목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제 종목 또한 진천선수촌에 파트너로 해서 더 많은 선수를 입촌을 시키고 싶어도 일단 첫 번째, 진천선수촌에서 받아 주지를 앓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트너선수로서 필요한 종목들은 진천선수촌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종목단체에서 지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종목단체는 그래서 몇 종목씩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대표가 있고 주니어가 있고 또 상비군이 있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선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저희가 국가대표선수가 되었을 때 파트너선수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개인종목을 보게 되면 10명의 선수가 한 15명이 돼서 계속 파트너로 같이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1진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두 번째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종목들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의 플러스 규정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정돼 있는 선수를 더 그 이상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문체부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전 종목을 공정하게 파트너선수를 여기다 넣어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나머지 절차는, 결국은 정부 내에서 행정절차 또 예산 확보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대표적인 단체종목 출신 위원님하고 개별종목 출신 위원님 계시니까 지금 여쭙볼게요.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발하면 엔트리보다 몇 배 정도 더 선발하지요?

○임오경 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림픽에 규정되어 있는 선수 정원을 일단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열다섯 분인데 핸드볼 종목……

○임오경 위원 1명 더 추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입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핸드볼 한 경기 할 때 그 안에 열다섯 분이 들어가요?

○임오경 위원 7명이 경기를 뛰는데 교체선수까지 해서 15명을 엔트리로 정식대회에서는 하는데 1명을 더 하는 것은 와일드카드로 부상선수, 예선전을 치르는 국제대회에서는 예선전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와일드선수가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명의 선수를 입촌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동시 진행을 하면 일곱 분이 시합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여덟 분이

보조나 대기를 위해서 뽑는 것이고?

○임오경 위원 그것은 정식 규정에 들어가 있는 선수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선수층에 입촌을 할 때 18명의 선수를 할 경우 16명 외 2명의 선수는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협회에서 지원하고?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8명으로 할 때도 진천선수촌의 행정상 절차를 밟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파트너선수는 특히 개별종목에 많이 의미를 두셨던 거지요?

○진종오 위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할 때 선수를 국가대표를 2배수, 3배수를 뽑는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어떤 종목은 선발전이 일찍 끝나서 1년 동안 합숙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선발전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이삼 개월밖에 훈련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고 다 상이합니다. 지금 종목별 파트너훈련 요청하는 종목이 30개 종목이 넘어요. 개인종목뿐만이 아니라 단체종목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제가 확실하게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대표를 2배수, 3배수로 뽑았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하지만 파트너선수를 도입하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특히 투기종목이나 대련종목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선수들도 국가대표선수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산 또한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했을 때 10명의 국가대표가 있다면 10명의 국가대표가 체급이 다 다르게 됩니다. 체급이 다른 선수들끼리는 대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부상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체급이 10명이 필요한데 2배수로 뽑아서 20명을 뽑았을 경우에는 대련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기로 들어온 선수가 올림픽을 나가거나 선발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엔트리에 조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파트너선수를 이삼 개월 정도로 단기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종목별로 꿈나무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파트너선수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보면 너도나도 파트너선수 하고 싶다고 희망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지 그냥 뭉뚱그려서 국가대표를 2·3배수 늘린다……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멘토 기능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관님께서 실행할 때 잘 감안해

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번 소위에서 한 번 했었고요.

주요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님 안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와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역할분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정하 의원님 안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와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행사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체육행사 긴급안전점검 및 행사 중단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체육행사 안전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오경 의원님 안은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구성·예산지원 및 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체육행사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월 24일 소위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와 별도로 체육행사 안전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별도로 체육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 및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의 역할과 사업, 운영방안과 체육행사에 대한 재단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성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8쪽 이하랑 23쪽 등에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첫째, 체육행사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긴급안전점검 및 체육행사의 중단 권고에 관한 조문 문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에 맞추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정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3쪽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정 규모 이상 체육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위해 임오경·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의 역할 및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육행

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두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두 의원님의 개정안 간 약간 차이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체위 전문위원실과 사전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1항, 체육행사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는 대상에 대해 임오경 의원님 안은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박정하 의원님 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정하 의원님의 안으로 하되 표현을 정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제2항, 3항, 4항, 5항은 문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6항 관련은 문체부는 박정하 의원님 안의 제5항을 수정안 제6항으로 수용하여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명문으로 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임오경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동의하시고.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번에 한 번 논의했었는데 일단은 스포츠안전재단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의 반대가 있잖아요?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재부에서 여전히 반대의견은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스포츠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 법인의 형태보다는 특수법인으로서 나중에 기타공공기관이 된다는가 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의원님 법안하고 박정하 의원님 법안, 2개를 통합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안전재단 문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인데 문체위에서는, 필요성은 문체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없이 통과시킨 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이 최종 통과되는 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문위원, 이 법안을 통합하지 말고 각각 개별 법안으로, 박정하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나중에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분리해서 심의를 하자?

○김승수 위원 예, 분리해서.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차관님, 기획예산처에서 반대의견을 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인건비, 운영비 이게 국가재정이 더 들어갈 거다 그런 내용……

○임오경 위원 항상 하던 말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문체부에서는 유사기관 조사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저도 유사기관 조사해 봤더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연안전지원센터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기관 사례 조사를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스포츠안전재단은 제가 볼 때는 내용만 담자라는 거잖아요. 저는 내용만 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유사기관들과 똑같이 원래는 별도 법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별도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내용만 담는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한다라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되지 않고요.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들어오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원래는 이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다는 이유 하나로 윤석열 정부 유인촌 전 장관께서 이것 독립법인으로 하라고 갑자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산하단체로 운영했더라면 괜찮은데 독립법인으로 하라고 전 장관이 말을 해서 대한체육회를 지금 벗어난 사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도 관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저는 대한체육회와 무관한 독립법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제가 기획예산처에서 왜 반대가 심한가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방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더라고요.

현재 재단의 민간법인 지위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기준 수립 및 지속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서 핵심안전 요소가 반영된 현장 안전관리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정법인화 전환을, 조직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발의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는 게 법정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500억 원이 넘지 않는다. 지금 저희……

문체부,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체육계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외에 예산 500억 넘는 데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처가 가져온 문제점을, 저한테 의견을 준 사항을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혹시 이 법안 관련해서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조계원 위원 임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들어와 있는……

○소위원장 박정하 동의하시면 아예 기재부 의견을 듣고, 이석한 후에 다시 진행을 할까요? 괜찮아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된다면 저는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원장 박정하 아까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의견 제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임오경 위원께서 직접 질의하시거나 궁금한 것 논의하실 게 있으면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하라고 할까 하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여기서 털어놔야지요. 어차피 여기서 의결해도 기획예산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문체부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계속 협의를 해 왔습시다마는……

○소위원장 박정하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중이고 기재부로서 확답은 아직 못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계속 해 왔습시다.

○임오경 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건 바이 건으로 저희 문체위에서 다른 법안을 낼 때마다 지금 기획예산처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문체부가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똑같은 사안으로 오늘 건도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기획예산처는 자기네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문체부는 이 벽을 반드시 넘겨야 되는……

저는 이 법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6년째 제가 여기에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 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태클을 걸어왔더라는,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이지만 저희는 그때마다 잘 역할을 해서 통과시켰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 다 까셨나요? 위원님들,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자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이거 하던 것 지금……

○소위원장 박정하 하던 거 할 거예요.

마저 발언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문체부가 법사위에서도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법정법인화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관리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문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다중밀집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부상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상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기관들은 기관대로 계속해서 이걸 떠맡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게 문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법에라도 내용을 담아 놓게 된다면 그 래도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데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우리 K-문화라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크게 끌고 있으면서 우리가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화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행사들을 계속해서 개최를 해야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는 문화 파생상품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문체부 부처 자체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인력이 나 구조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냥 계속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논리하에 그러한 국가의 기조에 따르지 않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으므로 그 부분, 차관님께서 법사위에 이 법안이 갈 때에 피력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배석을 하셨으면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K-문화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K-문화 300조 혹은 500조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일할 인력과 구조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확장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백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최가 될 것이라는 걸 가정해서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및 앞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행사안에 대해서도 적정 규모의 인력 동원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안전재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체육행사는 아니었지만 BTS의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었

지요. 과도한 행정인력의 동원 혹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경찰관 한 분에게 8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동원된 인력에 비해서는 그 행사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더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과도한 집행 없이 하려면 정확히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안전 보장을 하면서 적정 규모의 그러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 내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체육회의 이슈 때문에 지금 이게 특수법인화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특수법인화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오히려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안전의 문제점, 그 중요성에 대해서야 뭐 백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문화행사, 저번주 BTS 공연에서 안전 총괄 주관은 어디에서, 어떤 부처에서 했는가요, 문체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했고요. 문체부는 무대 주변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장관, 차관 그리고 상황반을 구성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행사 또 체육행사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리고 안전재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포츠행사보다 문화예술행사가 더 많잖아요, 이 숫자가. 그래서 안전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기재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이게 특수법인화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논리 싸움에서라도 우리가 법사위 가서 그 이후라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안전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굉장히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스포츠행사에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보면 돌발적인 사고 위험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 이외에 대테러 같은 원인에 의한 사고도, 일단 대테러는 국정원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전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주관은, 대테러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정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지금 현재 안전재단의 역할은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특수법인화함으로써 이런 역할을 좀 더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일반 다른 그런 법인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특수법인화할 그런 스포츠 관련 법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법인 관리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나 말 그대로 국가 조직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사실상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책임성을 갖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민간 법인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특수법인화해 가지고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의 역할보다는 좀 더 정교하면서도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다른 기타 법인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기재부뿐만 아니라 일단 국민들한테도 좀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현재 공연안전지원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BTS 공연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저희 눈으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기관에서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좀 찾아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관님, 지금 이 체육인 복지공제사업하고 재단의 안전공제사업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 지금 체육인 복지공제사업과 안전재단 공제사업이 같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같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를 문체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단의 복지공제사업은 특정 체육인, 5년 이상 활동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스포츠안전재단의 공제사업은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 목적 사업으로 대상·목적·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능이 다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정법인화를 해 주게 되면 타 체육단체들도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3개의 종목단체들이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여기는 법정법인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곳만 딱 특정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 부분은 법정법인화할 이유도 저희들은 못 느끼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하고 전혀 중복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기획예산처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자체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찾아와서 배석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도 이렇게까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안전재단이 벌써 15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임오경 위원 아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렇게 타 부처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문체부에서 역할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재단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은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상시적 인건비·운영비 등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그동안 안전재단의 운영 수익이 늘어나면서 국고보조율은 예전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계원 위원 그러면 왜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도……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국가안전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국가가 국가 책임하에 일관되게 운영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부처 차원에서 예산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리를 해 와야지. 저렇게 와 가지고, 지금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마 또 법사위에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조계원 위원 당연히 또 법사위는 더 강력하게 막으려 하지 않겠어요, 저 정도 상황이면? 그런데 문체부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로 납득을 시켜야지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동의한다면.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시라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것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쭉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엉뚱한 주제를 끌어오면, 연말부터 쭉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K-컬처 300조, 문체부 시행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수립됐어요?

2차관님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조에 관해서 범위, 정의에 관한 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소위원장 박정하 아니, 그게 연말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나중에 발표를 하신다라고……

○소위원장 박정하 언제쯤 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마 그때 보고 회의를……

○소위원장 박정하 전체회의 때 제가 다시 여쭙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그저께도 여쭙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수립이 돼야지 엇그저께 있었던 BTS 공연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은 꼭 스포츠 안전과 관련한 게 아니더라도 K-컬처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려면 이런 공연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획이 수립돼서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되고 국민들한테 발표가 됐으면 기재부 설득하기 훨씬 좋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안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여쭙 봐요. 제가 내일모레 전체회의 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이게 몇 달씩 이걸 묵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다 이거지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것 거의 준비는 됐는데 절차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돼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대통령한테라도 보고가 돼야 힘을 받을 거 아니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소위원장 박정하 그래야 기재부 설득도 할 거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래야 스포츠안전재단이니 공연 안전이니 이런 것 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쪽 주신 게 어찌면 그동안 문체부가 너무 위축이 돼서 그런지 기재부와 협의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변해 온 환경과 달리 이 체육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안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마냥 통상적으로 해 왔던 습성대로 기관이 운영되고 예산이 수립되면 안 되는 것을 기재부도 좀 알아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체부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는 말씀이니까 그 점 꼭 유념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6개 법안을 대안으로 묶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혹시 전체 6개 법안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분리하자 이런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6개 법안 다 묶어서 저희가 심사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안전재단에 대해서 우리 문체부에서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못 하면 이 6개 법안이 한꺼번에 다 같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꼭 잘 설득해 주세요. 모든 것을 여

기다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있으나 접수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대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부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을 위해 이종배·박수현 의원님께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 기본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예외적인 조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표현은 제12조의2에 보시면 기부금품법 제5조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좀 명확히 하는……

부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조항은 수정이고 부칙은 수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부칙도 표현만 2조(경과조치) 그전에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계원 위원 예, 여기도 수정의견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여기에 기부금품법에 따른다, 명확하게 법의 명칭을.....

○조계원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추가적인 의견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1쪽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된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방문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2022년 평창군 옥천군, 2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5년 12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1120여 개 이상의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혜택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고 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 지역 관광업체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업 시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급 대상 지역을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으로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은 7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과 11쪽은 둘 다 전담여행사 관련 규정입니다.

먼저 10쪽 조계원 의원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여행사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관광 관련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에 178개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행상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질서 유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11쪽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탈자의 수, 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후 중국인 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체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만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나 공모가 없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의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 수용하나 행정제재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도 같은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과 수정의견은 17쪽부터 2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먼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 근거 신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김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문체부는 발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발의안은 발급기관을 문체부와 지자체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문체부장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발의안에는 발급지역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라는 관광주민증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발급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규정 및 범정부 협력 근거 마련 그리고 단체관

광객 이탈사고 관련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담여행사와 관련해서 조계원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와 이탈사고에 대한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여행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두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두 의원님의 개정안에서 추상적인 표현을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의 위임과 관련하여 문체위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항 관련 조계원 의원님 안의 금지행위 규정에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로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서 말하는 시설 또는 점포는 단체관광객이 많이 가는 면세점 쇼핑점 테마파크 유흥시설 등으로 각 법정 등록시설 및 점포별 적정한 수수료의 범위를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관련 조계원 의원님 안의 무단이탈 사고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법에 규정하고 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안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산업현장의 현황 및 특수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반영하여 정책 또는 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무부와 한국여행업협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관광객에게 어떠한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식음, 숙박, 관람, 쇼핑 이런 업체에서 관광주민증을,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급받게 되면 업체에 가서 사용할 때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외부에서 관광을 간 사람들은 오히려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이미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발급 건수는 늘고는 있어요. 발급 건수는 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나? 혜택 이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이게 발급 이용자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시군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수 대비로는 이용률이 꽤 됩니다. 한 50%가 넘어가는데 여러 군데 발급을 받은 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이용률은 얼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낮은 측면은 그 참여한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인식하고 2027년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업체가 할인해 주는 만큼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법안과 예산이 일원화돼서 같이 가야지 이렇게 지금 발급 건수는 늘고 있는데 이용률은 줄어 들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이 개정안의 발급 주체를 보게 되면 문체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너무 혼선이 심하기 때문에 발급 기관은 문체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임오경 위원 지자체에서 할인 혜택도 주고 다 하는데 지자체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조계원 의원님하고 박수현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에서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최근의 일부 전담여행사 쇼핑 강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가 상품 운영 등으로 인해서, 품질 저하로 인해서 문제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이 법안에 위원님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의 관리 감독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지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저희가 지금 법에 담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은, 문체부에서는 어떤 방안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뭐……

○임오경 위원 제재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 감독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현재 발의해 주신 안이 통과가 되면 무단이탈하는, 전담여행사 쪽에서는 고객 관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상당히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담여행사 제도에 있어서 여행사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현재도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고, 다만 고의·과실은 아니더라도 이탈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거든요. 저희들이 웬만큼은, 웬만한 것은 이게 또 영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할 거지만 과도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정지 내지는 너무 심하면 지정취소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 안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처럼 관광객의 무단이탈 규모나 횟수 등에 따라서 업무정지 등 제재수단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행사의 고의나 공모가 없는 경우까지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잘해 주셔야지 무조건 일관되게 하나로 그냥 다 제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이 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행사들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 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항에서 이탈률이나 이탈 횟수, 여러 가지 성격을 고려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전담여행사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기도 하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예전에 여행사 법인을 설립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돈을 좀 아끼려고 법무사나 이렇게 통하지 않고 첫 단계에서 서류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행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광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법적인 내용으로는 전담여행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의 관광 관련 양해각서·협정에 의해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 이외에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중국만 하고 있지요? 중국만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전담여행사가 취소가 된다고 해서 여행업 자체가 취소가 된다는지 아니면 중국 여행객을 그 여행사에서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여행업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여행업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필드에서는 중국 관광객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실효가 있겠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만 전담여행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이게 중국 전담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읽어 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갈 거야’라고 해서 중국 측 여행사에서 모집한, 거기도 전담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그 전담기관을 통해서 한국 쪽으로 연락이 오면 그것이 우리 쪽 전담기구에 의해서 여행사들에 배분이 되는 형태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기능을 안 한다고 칩시다. 여행업 자체에는 어떠한 제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그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중국 관광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재원 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단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써서 이 법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MOU 체결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정말 실효적으로 하고 방지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중국만을 한정해서 볼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기왕에 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법안 조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한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의 전담 취소가 일어났으니 그 부분에 마땅한 제재규정을 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지자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 내지는 지자체장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취지 자체는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만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전담여행사가 또 미래에 어느 나라로 확대될지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의 부분은……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중국은 전담여행사만을 통해서 들어오게 한다고 하고 여행업 자체는 사실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사실 형평성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것은 중국에서 요구하는 제도 때문에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중국 전담여행사인데 스페인 사람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영국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이런 건데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모집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사람도 오고 영국 사람도 오는 와중에 중국은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영국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제재를 안 가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게 MOU에 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검토보고 요지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 그런 협정이 있을 경우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조항이 시행이 되면 나중에 이 조항은 어느 나라든 전담여행사가 생겨나면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 전담여행사만의 규정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관광객의 이탈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이탈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담여행사 취소하면 ‘그래, 중국 사람들은 당분간 우리가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하는 다른 여행업이나 이런 데는 전혀 제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데, 이게 중국 전담여행사가 비자 발급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앞서 조계원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 발언 신청했었던 것 같은데 조계원 위원님 먼저……

○조계원 위원 어쨌든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좋은 취지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용된 것 보면 이용률이, 2022년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13.87%, 그런데 2023년에는 6%대 그리고 2024년에는 3.12%, 2025년에 다시 좀 올라왔네요, 5.96%. 그리고 2026년도 1·2월 달은 이 정도 추세거든요.

이게 디지털관광증을 지금 각 지역별로 만들면 지역에서만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용합니까? 아예 그냥 인구소멸지역에서는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관리도 더 쉽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참여 업체를 지역소멸도시에서, 시군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요? 문체부에서 통합 발급해서, 그러면 불편도 덜어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관광객 입장에서든 할인받으려고 이 지역 갈 때 또 발급해야 되고 저 지역 갈 때 새로 발급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고 그러면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용률도 훨씬 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래서 지역의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거냐, 시군에서는 참여할 거면 그런 가맹기업들을 늘려라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늘리게 하고 그러면 관광객도 좋고 지역도 좋고 윈윈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박수현 의원안에 보면 기존에 전담여행사가 모집해서 온 관광객들이 고의나 공모를 통해서 이탈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제재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사고

횃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조금 줄여 가지고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사고 횃수 이렇게 해 놔는데 그 뒤에 사실은 지정 취소 또 업무정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법에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어떤 위원님들은 또 염려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의도 아닌데 처벌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지금 고의나 공모가 없는 경우에도 빈번하게 특정 전담여행사의 여행객들이 계속 무단이탈을 한다거나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이탈했던 경우 그것도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세세한 규정들은 사실은 영이나 규칙 수준으로 가야 될 수준인데 그것까지 여기에 넣는 것이 적절하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들이나.....

○조계원 위원 경각심 더 세우자 이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어느 정도, 또 너무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요소도 되고 해서.....

○소위원장 박정하 뒤의 누구 답변하시려고.....

○김승수 위원 앞서도 이게 고의 또 공모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문체부에서 제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재량의 범위를 너무 줄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꾼다는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사유를, ‘등’은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외의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외의 경우에 처벌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정하 뒤의 공직자분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비자를 완화하거나 강제하는 그 조항들이 실시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법무부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전체 부처가 모여서 그 이탈률을 지금은 5% 이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취한다는 훈령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법제화되면서 사실은 이게 부령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법무부나 사실 문체부나 외교부나 이 비자 정책의 속도와 저희 부령으로 적용되는 속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있고요.

그래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저희도 가능하면 조금 더 그런 사정을 고려해

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무부 비자 정책과 연동한 이 전담여행사 제재에 대해서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구보다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탈자 수라든가 이탈률 부분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지금 부령으로 정해지는 내용에 사실 이탈 시간 들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삭제할 요청드린 게 어느 시점부터를 이탈 시간으로 볼지, 이분들이 아웃할 때 사실 공항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이탈로 보는데 이탈 시간 같은 내용을 이번에 정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삭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나머지 이탈자 수라든가 이탈률 부분들이 분기별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불가능한 조치는 아닌데 조금 더 재량이 있게 되면, 저희가 부령을 매번 또 개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업무 진행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규 19쪽 5호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 좀 침익적인 사유인데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법에서 정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이탈자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사고 횟수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열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지금 규정된 게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사고 횟수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어느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탄력적으로 재량권을 가지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 수정의견에는 이탈 시간은 빠져 있습니다. 이탈자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 사고 횟수.

지금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앞의 5호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도 5항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계원 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했고 부령은 보다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고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령을 자주 바꾸자는 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기준을 엄격히 잘 세우면 안 바꾸고 계속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체부 수정안대로?

○소위원장 박정하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김승수 위원 지금 법령의 체계가, 일단 법에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계원 의원안에 보면 거기의 수정의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기에 다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 또다시 5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족 같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처벌, 업무 정지와 또 아니면 지정 취소와 이런 무단이탈의 정도를 같이 이렇게 형량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법령 체계상 맞지……

○김재원 위원 영에 들어가 있어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영에 들어가고 그 밑에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내리는 건 규칙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영에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차관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 측 의견 정리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어떤 게 더 실무적으로 편하신지.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저희가 개정안의 이탈자 수, 이탈률 등을 고려하는 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비해서 지금 이탈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탈률, 이탈자의 수……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시 차관님 의견하고 취지가 비슷한 걸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 조금 충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의하신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박수현 의원안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타당하다고 보신 거지요, 아까 의견 주신 게?

○전문위원 김용규 예, 문체부안으로 협의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부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시행지침이지요. 여기에 지금 이러한 지정 내지는 취소 내지는 이탈객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법안 자체가 다 신설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법안으로 끌어올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여쭙보신 것은 그런 것들이 법체계에 있어서 상관이 없느냐, 괜찮겠느냐라는 부분을 여쭙보신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요.

○소위원장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은 법체계상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는 차관님 처음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충돌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규정을 해서 법안을 성안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여쭙본 거예요.

저는 가급적 정부 측에서 일하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법률안을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구한 거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정리된 대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법안에 넣자가 좀 전에 차관님이 말씀 주신 거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것 업무 시행지침은 완전히 삭제할 건가요, 법으로 올리 시게 되면? 이게 세부적인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또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 까지 일괄 포괄해 가지고 법안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문체부 부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거의 비슷한, 등록 그다음에 취소 부분까지 여기 시행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존에는 지정 취소만 가능했던 걸 이번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김재원 위원 추가 부분만 법안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만 법안에 올려 놓고 나머지는 시행지침에 있는 걸로 그냥 한다는 게 체계상 말이 안 되니까 여쭙는 것이지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그러면 부령에는 어떤 규정을 넣을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김재원 위원 여기 정의도 있고 지정 및 관리, 갱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김승수 위원 법에 넣을 내용하고 부령에 넣을 내용하고 또 시행규칙에 넣을 내용하고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담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는 법에 그래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령에는 이러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위반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가 딱 매칭이 되는 그게 규칙에 들어가야지요. 그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로요.

○조계원 위원 이 수정의견에 보면 지정 취소 그다음에 업무 정지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정립한 거고요. 신설한 거예요. 그전의 지침이나 이런 걸 끌어올리는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지금 지정 취소 부분이 고의적으로 한 경우는 지금 법제화되어 있고 나머지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법무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훈령으로……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다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번 조항에 신설된 거라 이거지요? ‘이런 경우에 지정 취소하고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지침 제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담여행사 제재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 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시

행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행지침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 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으로 올렸을 때 이 시행지침 자체를 삭제하실 건지를 여쭙 보는 겁니다. 시행지침에서 법안으로 승격해서 올리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대통령령도 정리를 하시겠다라는 입장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 각각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더, 그러니까 입법취지는 이미 다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쪽입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시행령보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도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오경 위원 저는 한말씀만 드릴게요.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60일로 후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일반은 14일인데……

○임오경 위원 어떻게 보면 신속한 국민 권리구제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저희 절차에 보면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6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법률에 상향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행정기본법을 본다고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한은 14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도 모든 게 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14일 안에 피드백을,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개정안에는 60일로 두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신속한 국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배되고 후퇴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일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의신청을 한 사람 측면을 생각해 줘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회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날짜 잡고 뭐 연락하고 해서……

○임오경 위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이의신청 기한을 우리가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갑자기 14일에서 6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현재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임오경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다른 일반 사안은 14일 맞고요. 이것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시행령에서도 60일로 되어 있었고 그 내용 그대로 법안으로 옮겨 오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들어오게 되면 처리기간 뒤로 더 밀리는 것을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대현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승수 김재원 박정하 임오경 조계원 진종오

○청가 위원(1인)

민형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체육국장 이선영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체육협력관 임영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출석 진술인

권두현(재미와 느낌 연구소 대표)

서원석(사)한국관광학회 회장)